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논의 착수

- 올해 첫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제78차) 개최 -
- 7월 말까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9일(월)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의 합으로 결정되며, 이는 2020년 7월 중생보에서 향후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근 6년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해 왔다.

\*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7~'21) 연평균 2.12 vs ('22~'25) 5.75, ('26) 6.51

올해는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해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TF를 운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였고, 이후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준 중위소득 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급격한 변동성 요인 분석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시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6년에 열리는 첫 회의로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필요성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TF 및 생계·자활 급여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7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개요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05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이웅채 최영은 (044-202-3065)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교통부 · 교육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차관
  - 위촉직(10인):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정 은 경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김 이 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최 은 옥	교육부 차관
		임 기 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 민 재	행정안전부 차관
		권 창 준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석 재 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태 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 현 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 미 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부총장
	공익	송 인 규	법무법인 정원 대표 변호사
		김 도 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조 상 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수 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 현 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 (개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 **現 산정방식('21년~)**

- (원칙)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

**n년 기준 중위소득 = n-1년 기준 중위소득 x (1+기본증가율) x (1+추가증가율)**

\* 추가증가율은 6년간 ('21~'26) 한시 적용

- (기본증가율) 최근 3년(n-3~n-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
  - ※ 다만, 차년도(n년)나 당년도(n-1년)에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증가율의 3년 평균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추가증가율) ①기준 중위소득-가금복 간 격차 해소, ②개편된 가구균등화 지수 반영을 위해 6년간('21~'26) 한시적으로 추가증가율 적용
  - (통계원 변경) '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증가율을 산출할 가구소득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편('20.7월, 제60차 중생보 결정)
  - (격차 해소) 통계원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가금복 중위소득 간 격차('18 기준 12.49%) 단계적 해소(6년간)
    - \*  $(n-3\text{년 가금복 중위소득} / n-3\text{년 기준 중위소득})^{1/6}$
  - (가구균등화 지수)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지수 0.37 → 0.4 / 2인 가구 0.63 → 0.65 등
    - \*\* 격차 해소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균등화 지수도 6년간 단계적 변경